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『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6년 1월 11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06년 1월 18일

제1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웅

나. 제안이유

-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,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, 지방행정 혁신인력 및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인력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한시정원과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담당으로 승인된 정원을 직급별로 증원조정
-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담당 업무의 증가에 따라 복지환경국의 청소년 업무를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로 조정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지방공무원 총정원 : 1,478명 → 1,487명(증9)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453명 → 1,462명(증9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5명(변동없음)
- 분야별 정원 조정내역
 -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한시정원 : 2명(7급1, 8급1)
 - 복식부기 확산보급 전담인력 한시정원 : 2명(7급1, 8급1)
 -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한시정원 : 2명(6급1, 7급1)
 - 과거사정리 업무추진 한시정원 : 1명(7급1)
 - 보육담당인력 승인정원 : 2명(6급1, 7급1)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'05. 10. 20)에 따라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함
-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유사기능인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로 조정

라. 참고사항

- 도 자치행정과-8397('05.10. 4)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9014('05.10.17) 복식부기관관련 전담인력 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9209('05.10.21)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 지침
- 도 자치행정과-10808('05.11.29)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관련 정원 승인
- 도 자치행정과-11129('05.12. 8) 시군 보육담당공무원 정원 승인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○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

-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전면실시에 따른 인력보강,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,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및 과거사 정리 등 신규행정 수요에 따른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전담인력 4개분야 7명과
-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등을 위해 승인된 보육담당 신설 정원 2명 등 총 9명의 정원을 증원 하는 것으로서 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1,478명 → 1,487명으로 개정하는 것임

(집행기관의 정원 : 증9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변동없음)

○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영유아보육법령의 전면개정·시행('05.1.30)과 보육시설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을 신설하고
- 사회복지과 청소년담당을 도청직제와 유사기능인 새마을과로 업무를 조정하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업무를 복지환경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국간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